

문서번호	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-704
결재일자	2025.12.10

연구위원	인천공공투자 관리센터장	부원장	원장	
배덕상	윤하연	윤하연	12/10 최계운	
협조	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			이양호 심진범

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수수료업무 수행 체계 구축

2025. 12. 09

인천공투 민간투자사업 수수료업무 수행 체계

-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근거하여,
- 인천공투의 민간투자사업 수수료업무 수행체계 구축

□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(이하 인천공투) 민간투자사업 업무 범위

-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「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 2항 3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의 업무 수행 가능
- 「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」 및 동 조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인천공투는 민간투자법 및 개별법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별 사전검토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. 개별법 민간투자사업(총사업비 500억 미만)에 대해 타당성 분석 업무 부여
- 기획재정부 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(2024.10.14.) 별표 12에 의해 인천공투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됨.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법적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권한 부여
-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인천공투는 민간투자법 및 개별법의 민간투자사업 검토 등 법적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전문기관임

□ 민간투자사업 수행체계 마련 필요성

- 민간투자사업 검토 업무는 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, 비정형적이며, 간헐적으로 수행되는 특성이 있음. 고도의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하므로 **발주처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**
 - - 민간투자사업 주요 업무: 총사업비 2,000억(BTL 1,000억) 이하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, 공고안 작성,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
- 이에 KDI의 PIMAC, 지방행정연구원 LIMAC, 전문기관인 경기공투 등은 **민간투자사업은 수임 수수료 체계를** 운영 중에 있음. 또한 과제의뢰는 입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**협약과제로 추진**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 도출을 꾀함
 - -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1조(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) (4)항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은 독자적 수수료 기준안을 개발하여 의뢰 민간투자 검토사업에 적용 가능함

[표 1]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의 수수료 체계 운영 및 협약 체결 유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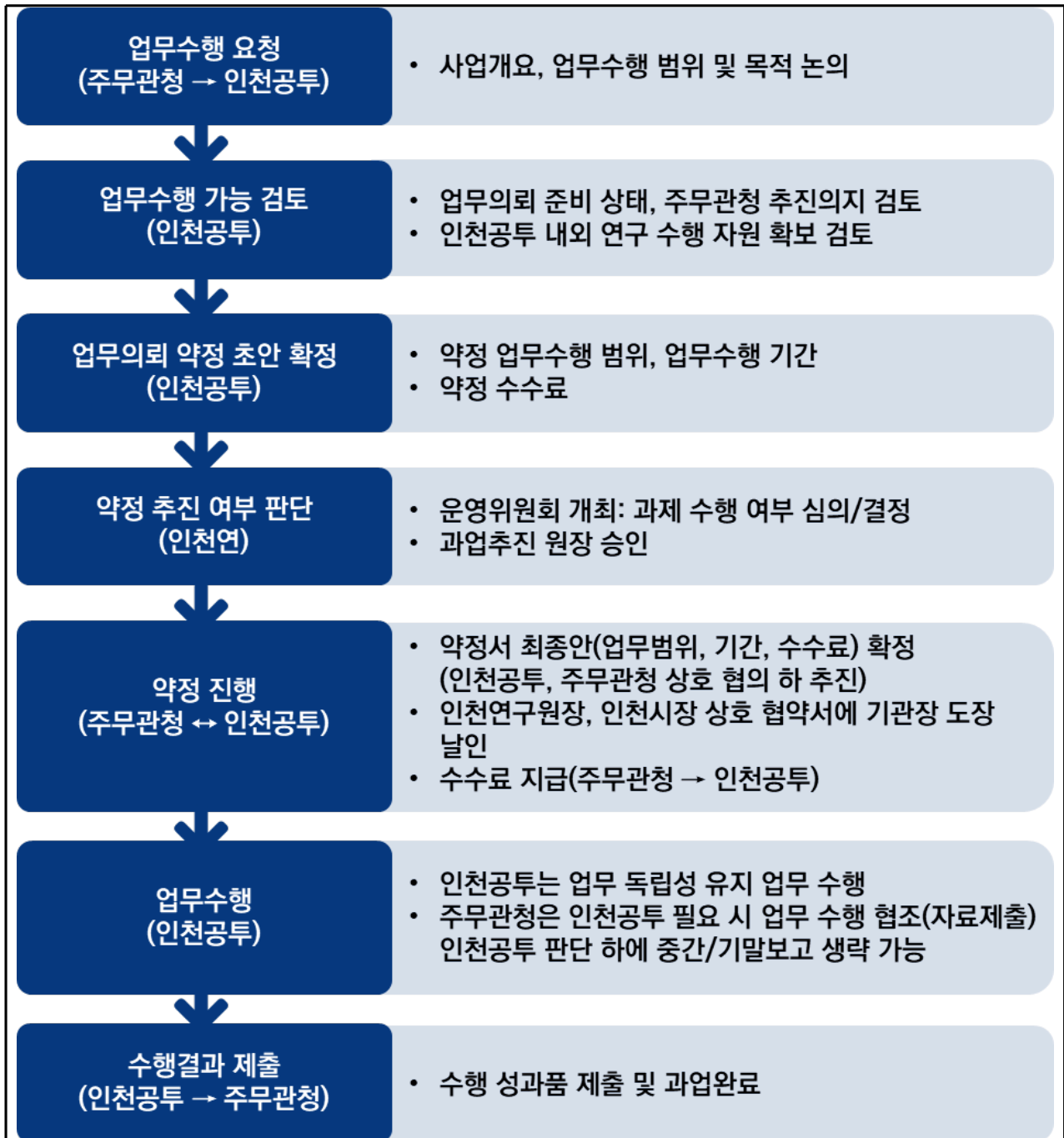
구분	PIMAC	LIMAC	경기공투	부산공투	경남공투
수수료 체계	0	0	0	0	0
협약체결	0	0	0	0	0

- 「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」의 지침에 의거하여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은 "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수수료 기준" 공람(재정관리담당관-9042(2024.07.18.))함. 개별법 타당성 수수료로 한정함에 따라 개별법 및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수수료 기준 개정이 필요함.
 - - (기준) 전문기관 지정 전인 관계로 LIMAC의 지방재정타당성조사 수수료 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축함. 개별법 타당성 분석으로만 국한되었으며 고급과 보통 2단계로 구성함
 - - (변경) PIMAC 등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수수료 수임체계를 참고하여 타당성 분석 분야를 4개 부문으로 구체화함. 타당성 분석 외 공고안 작성, 관리이행계획 수립 관련 수수료 체계를 구축함(표 3 참조)
- 민간투자사업 수수료 기준은 검토 업무별 난이도 및 범위, 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의 수행 체계 등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으며, 협약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 협약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.

□ 협약 체계

- 인천공투 민간투자사업 업무 수행 절차는 업무수행 요청부터 수행결과 제출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음

[표 2] 민간투자사업 업무 수행 절차



□ 민간투자사업 사업유형별 수수료 기준

- 통상적인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비용 포괄 금액임
- 통상 업무 이외에 업무 난이도 및 범위에 따라 기본 수수료 외 추가 업무에 대한 추가수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추가 업무 항목별 수수료 기준 예시를 제시함

[표 3] 민간투자사업 업무 유형별 기본수수료 기준(2025년 11월 기준)

사업유형		인천시군구 (만원)	그 외 (만원)	소요 기간 (월)	과업 착수 전 주무관청 필요 사항
타당성분석/ 적격성조사 (제안서검토)	철도, 도시개발, 산업단지 개발	14,300	15,400	8	- 사업계획 완료
	도로+항만	12,700	13,900	8	
	환경	10,200	11,300	6	
	기타 (도시공원, 주차장등)	11,700	12,800	7	
사업 기본계획(안)제3자공고(안) 작성 및 검토	작성	3,400	4,600	3	- 사업계획 - 적격성조사 보고서 - 유사사례
	검토	1,400	2,100	1	- 공고안 - 사업계획 - 적격성 조사 보고서 - 유사사례
평가 대행	제안서평가(1박2일)	7,000	8,200	2	
협상 대행	협상대행	11,300	14,900	6	- 적격성조사 보고서 - 공고문 - 우선협상자 제안서
	실시협약(안) 검토	1,400	1,500	2	- 실시협약(안) - 공고문
관리 이행계획 수립 (공동이행 점검 제외)		타당성분석과 동일			- 공동이행 점검 결과 - 향후 운영계획(초안)
사업시행 조건조정	사업시행조건 조정	9,500	11,100	6	- 운영 연차별 실적보고서 - 실시협약서 - 주무관청 및 상대방의 주요 대안
	자금재조달	7,400	8,600	6	- 운영 연차별보고서 - 주무관청과 상대의 주요 대안 - 실시협약서

- 2025년 11월 기준금액임.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수수료는 조정됨
- 업무의 난이도,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는 증액될 수 있음

[표 4] 기본수수료 외 추가 업무에 대한 추가 수수료 기준(예시)

추가 업무 유형	수수료(만원)	비고
▶ 특수한 기술성 검토(특수교량, 터널 및 철도 등)가 필요한 경우	500~1,000	특이사항 에 따라 변동 가능
▶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량 조사	300~1,000	
▶ 총사업비 추정 및 사업 규모 검토	1,500~2,500	
▶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(복합시설로 각 시설별 수요 및 편익 추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별로 반영)	시설별 1,500~2,500	
▶ 산업단지관련 설문조사, CVM설문조사, FGI, 기타 설문조사	500~3,000	
▶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발사업 ▶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▶ 수익시설이 포함되어 운영수지 분석이 필요한 경우	500~2,000	
▶ 기타 쟁점(법률검토) 등 특이사항 등	300~1,500	

- 자료(출처)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안내(접속: 2025.11.19.)

- https://limac.krila.re.kr/bbs/content.php?co_id=limac02_02_08

○ 비고 사항

- ① 수수료 항목에 명시적으로 미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가 인천공투에 접수될 경우, 인천공투는 업무 범위 및 투입 자원 수준, 민간투자사업 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업무 수행기간과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
- ② 업무 수수료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, 비용 현실화 등을 위해 수수료 체계 변경도 가능함
- ③ 또한, 특수 사업 유형, 업무 수행 고난이도 요구, 기타 등의 이유로 제시한 수수료 기준 이상 금액 요청 가능
- ④ 소요기간은 예상이며 과업 범위에 따라 제시된 기간 대비 초과 가능
- ⑤ 사업 종료 후 인천공투는 협약 수임금액에 대해 정산하지 않음
- ⑥ 협약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업무 착수를 위한 관련 자료를 입수한 후 인천공투가 착수계를 제출할 때를 업무 수임 시작일로 간주함